

정부는 국회와 법률의 통제 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내용>

- 2026.10.4. 연합뉴스는 「재경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미래기금법안 30%를 논쟁 예고」 기사에서,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① “미래대응기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수준” ② “지방계정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최대 4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① 기금 자체변경 요건 30%에 대해

-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운용 전 과정에서 걸쳐 국가 재정법·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습니다.
- **편성** 단계에서 기금 전체 운용규모는 물론 개별사업 지출규모까지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운용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편성·운용할 수 없습니다.**
- **집행** 단계에서 기금 자체변경은 국회가 법률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 내에서 기금 자체변경이 가능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기금의 성격(재정안정화 장치, 여유자금 운용 등), 미래대응을 위한 **신축적 집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기금 자체변경 요건을 30%로 설정하였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금 자체변경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❶ 기금 자체변경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주요항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❷ 초과세수의 적립·활용 등 기존 재정운용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 하도록 하여 다른 기금에 비해 보다 강화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회의 결산 심사, 감사원의 감사, 각종 재정성과평가 등 기존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통제도 가능하고, 민관 합동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② 지자체 보조사업 이월특례에 대해

- 미래대응기금은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지방’을 선정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계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하지만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협의, 토지보상, 각종 영향평가 등 지방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단년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지방계정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법상 이월특례 규정을 차용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재이월까지 가능(사업기간 최대 3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정여건,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미래대응기금법상 이월특례 조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월 가능 기간을 재이월까지(사업기간 최대 3년)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재이월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	책임자	단 장	박성훈 (044-214-2360)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bbakko0@korea.kr)